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32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제출일자 : 2022년 8월 29일

라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02일

2. 제안이유

○ 연구결과의 공개시점을 연구용역 종료 후 ‘지체없이’로 명시하고,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학술용역의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 ‘지체없이’로 명문화(안 제4조제1항).

나.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(안 제5조제2항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시점을 단축하고,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제출됨.

나. 서울시 정책연구용역 현황 및 입법 배경

○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정책이나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‘학술연구용역’ 또는 ‘정책연구용역’(이하 ‘연구용역’)을 활용함.

○ 정책연구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제 선정, 계약 체결, 과제수행, 결과 제출, 결과 공개, 연구결과 평가와 활용의 순으로 진행됨.

< 연구용역 관리과정 >

과제 선정	▷	계약 체결	▷	과제 수행	▷	결과 제출	▷	결과 공개	▷	평가·활용

○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‘행정효율규정’)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‘정책연구관리시스템’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(제54조제2항).

○ 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)는 이미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 연구·조사·검사·평가 등의 다양한 연구용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차단하고 예산 절감과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노력해 왔음.

- 최근 5년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시 연구용역의 평균 공개율은 90.3%임.

<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현황>

구분 / 공개 여부	계	공개	비공개
서울시연구과제	299 (100%)	270 (90.3%)	29 (9.7%)

○ 그러나 연구용역 과제의 일관성 없는 관리와 원활하지 못한 정보 공유로 인해 유사·중복 용역 수행은 물론, 정책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 저하 등으로 예산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○ 이에 개정안은 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을 지체없이 ‘정책연구시스템’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,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출됨.

다. 개정안의 세부 내용

(1) 정책연구용역의 공개(안 제4조제1항)

○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 공개 시점을 ‘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’에서 ‘종료된 후 지체없이’로 변경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제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.	제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 ① -------- ---------- 종료된 후 지체없이 ---------- --------
②~③ (생 략)	②~③ (현행과 같음)

○ 이는 「행정효율규정」에서 연구결과 등을 ‘지체없이’ 공개하도록 한 규정(제54조제1항)과 일치되게 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것임.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제54조(정책연구의 공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**지체 없이**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
2.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
3.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
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

○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용역을 공개하는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인 프리즘(PRISM)을 통해 계약내용, 연구결과 보고서, 평가 및 활동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연구용역 관리 규정이 없는 등 연구용역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태임.

○ 이에,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‘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’을 권고함(2020. 8.).

< 국민권익위원회 ‘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’ >

과제 구분	세부 내용	대상기관
1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	○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·중복 검증 –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검증을 거치도록 명시 ☞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	지방자치단체
	○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–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☞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	지방자치단체
	○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– 연구과제,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☞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	지방자치단체
2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	○ 연구용역 관리법령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☞「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	행정안전부
	○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–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 ☞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	지방자치단체
	○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– 연구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증을 수행 –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 ☞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	지방자치단체
3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	○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– 연구결과, 평가 및 활용상황을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 ☞「연구용역 공개 조례」 제·개정	지방자치단체
	○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–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 –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 ☞「연구용역 공개 조례」 제·개정	지방자치단체
	○ 연구결과 등 공개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– 연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, 공개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 ☞「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 ☞「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」에 반영	행정안전부

○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의 공개 시점을 앞당겨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타당함.

○ 다만. 연구용역 공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와 활용상황 점검 등의 공개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법 보완이 필요함.

(2)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 적시(안 제5조제2항)

○ 개정안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정보공개법')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연구결과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하도록 하고,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① (생 략)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집행기관의 정책·시책·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집행기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. <삭 제>

○ 이는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만 제외하고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·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용우	02-2180-8062